

	실병관리청	보	도 침	밝고	사 료
배 포 일	배 포 일 2020. 10. 13. (총 22매)			부서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팀 장	홍 정	익	전	화	043-719-9370
담 당 자	진 여 원,	최 은 경	겐	→ L	043-719-936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는 10월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4,805명(해외유입 3,435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35명으로 총 22,863명(92.17%)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50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91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34명(치명률 1.75%)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 (10.1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69	18	1	0	0	1	9	0	0	32	4	1	2	1	0	0	0	0
누계	21,370	5,146	437	7,053	867	442	372	117	61	4,086	205	143	430	108	136	1,510	218	39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 (10.1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추정)유입국가 ^{**}					확인 단계		국적	
구분	합계	중국	아시아 (중 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33	0	26	1	6	0	0	21	12	4	29
누계	3,435	24	1,725	605	973	93	15	1,607	1,828	2,021	1,414
	3,433	(0.7%)	(50.3%)	(17.6%)	(28.3%)	(2.7%)	(0.4%)	(46.8%)	(53.2%)	(58.8%)	(41.2%)

** 아시아(중국 외) : 우즈베키스탄 1명(1명), 필리핀 1명(1명), 방글라데시 1명(1명), 러시아 14명(14명), 네팔 4명(4명), 일본 5명(4명), 유럽 : 우크라이나 1명(1명) , 아메리카 : 미국 4명(3명), 캐나다 1명, 브라질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확진자 관리 현황* (1.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중증환자 ^{**}	사망자
10.12.(월) 0시 기준	22,728	1,542	87	433
10.13.(화) 0시 기준	22,863	1,508	91	434
변동	(+)135	(-)34	(+)4	(+)1

^{* 10}월 12일 0시부터 10월 1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 :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를 받는 환자, 중증 : 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10월 13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결과 변동 가능
 -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참조
 -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과 관련하여 격리 중 5명이 추가 확진 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4명*이다.
 - * (구분) 환자 58명(+4)(지표환자 포함), 병원 종사자 6명(+1)
 - 서울 강남구 승광빌딩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 (구분) 방문자 7명(지표환자 포함,+1), 가족 등 2명
 - 경기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병원과 관련하여 격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0명*이다.

구분	계	환자 (지표환자 포함)	의료인(종사자)	간병인/보호자	직원 가족
전일	51	21	4	25	1
금일	60	27(+6)	6(+2)	26(+1)	1

○ 경기 동두천시 친구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구분	계	지표가족	친구	동료	기타*
전일	15	6	4	1	4
금일	18(+3)	8(+2)	4	1	5(+1)

- * (기타) 친구모임 시 방문한 식당 등을 통한 추가 전파 관련
- * (추정감염경로) 10.1일, 4일 가족 모임 / 10.3일부터 동두천시 주점, 식당, 카페를 통해 친구, 시설 방문자 추가전파









- **강원 강릉시 지인 모임** 관련하여 10.9일 첫 확진환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 * (구분) 지인 3명(지표환자 포함), 동시간대 방문자 3명, 가족 2명
- **대전 일기족 식사 및 지인 모임** 관련하여 격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구분	계	가족	지인	지인가족	공부방관련	동료
전일	20	3	3	8	5	1
금일	21(+1)	3	3	8	5	2(+1)

- * (**추정감염경로**) 9.30일 지표환자 가족 식사 모임 / 9.28일 지인 만남을 통해 전파 → 10.1일 지인 가족모임 통한 전파 → 10.5일 가족의 근무지 통한 전파
- 대전 유성구 일가족 명절 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 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구분	계 가족		어린이집			종교 활동	직장	의료기관
一一世	711	게 기막 원아 종사자 가족		가족	활동	, io	의표기단	
전일	14	7	3	4	-	-	-	-
금일	27(+13)	7	3	4	8(+8)	3(+3)	1(+1)	1(+1)

- * (**추정감염경로**) 10.3일 지표환자 기족 명절 모임 → 어린이집/종교활동/직장/의료기관 전파
- 부산 부산진구 지인모임/의료기관과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인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구분	계	동거인 (지표포함)	지인모임	온종합병원**	이비인후과
전일	15	2	5	4	4
금일	16(+1)	2	5	4	5(+1)

* (**추정감염경로**) 동거인 2명 → 지인모임/온종합병원/이비인후과로 전파









- □ 10월 13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33명으로, 검역단계에서 21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 12명이 확인되었으며, 내국인이 4명, 외국인은 29명이다.
 - 해외 유입 확진자 33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26명
 (러시아 14명, 일본 5명, 네팔 4명, 우즈베키스탄 1명, 필리핀 1명, 방글라데시 1명),
 유럽 1명(우크라이나 1명), 아메리카 6명(미국 4명, 캐나다 1명, 브라질 1명)이다.
 -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는 10여 명 수준으로 발생하다가 10월 12일 29명으로 증가하여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10월 12일 경우 국내 어학연수 차 단체 방문, 오늘 13일은 국내입항 외국선박 선원의 집단발생 요인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 (10.8일 0시 기준) 9명, (10.9일) 16명, (10.10일) 11명, (10.11일) 12명, (10.12일) 29명
 - 외국선박 선원 집단발생 건은 지난 10월 6일 부산항(외항) 및 10월 12일 부산 감천항에 각각 입항한 선박의 러시아 선원들이 코로나19 확진된 사례로,
 - 10월 6일 입항 선박의 경우 선원 23명 중 10월 11일 하선신청자 13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8명이 확진되었고, 그에 따라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도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 10월 12일 입항 선박은 선원 총 20명에 대해 승선검역과 함께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3명이 확진됐다.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현재까지 62개 병원 600명(10.12일 16시 기준)의 환자에게 공급하였다고 밝혔다.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례를 공유하고, 방역수칙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 및 포털(www.safetyreport.go.kr) 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가능
 - 최근 주요 위반 조치 사례들은 **방문판매** 관련 **행정조치 위반** 사례 2건,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 128건 등이 있었다.
 - 병원, 약국, 보건소 내에서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여 신고된 사례가 있었다.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신규 집단발생 사례에 대한 지표 중 환자의 진단소요일*이 5일 이상 걸린 집단 발생 현황 등을 공유하고, 국민들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거나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신속하게 검사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 증상발생일로부터 코로나19 확진까지 기간
 - 다중이용시설, 방문판매, 가족모임 등 관련 일부 집단발생 사례의 경우 지표환자의 진단소요일이 다소 긴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경우 접촉자가 다수 발생하여 광범위한 추가 전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였다.

유 형	구 분	지표환자				
т 8	T 世	증상일	진단일	소요기간		
다중이용시설	부산 부산진구 노래방 관련	9.20	10.4	+14일		
니중에증시를	경기 수원시 스포츠아일랜드 관련	9.28	10.6	+8일		
모임	대전 유성구일가족 명절 모임 관련	10.1	10.10	+9일		
기타	경기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	10.2	10.8	+6일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역 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하였다.
 - 전국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여도 수도권처럼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지역은 고위험 시설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하고 있고,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및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에서는 거리 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설명하며,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당사자 및 관리·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 (착용법)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
 - ** (**과태료부과 계도기간**) 계도기간 한달간 부여 ('20.10.13.~'20.11.12.)
 - 아울러, 현재 대규모 유행을 억제하고 거리 두기 1단계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감염의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3. 10.5일 이후 코로나19 신규 주요 집단발생 현황
 - 4.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강화 안내
 - 5.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6.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별첨>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2.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3.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4.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5.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6.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3.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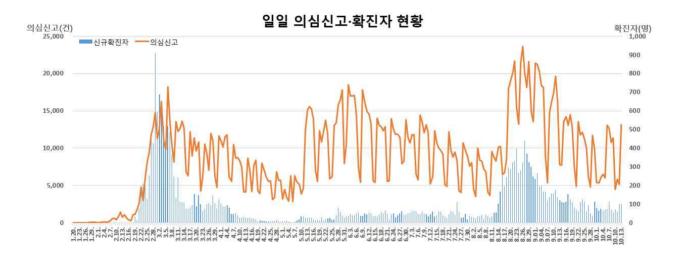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① **일일 확진자 현황** (10.13. 0시 기준, 24,80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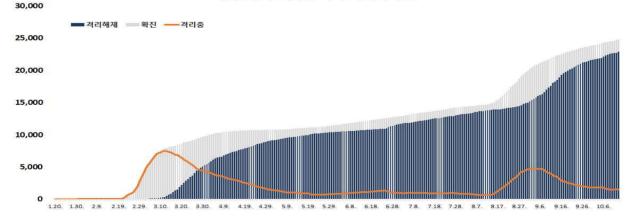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분	총계 ^{**}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丁正	5 71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급시 중	크게 급 6	
10.12.(일) 0시 기준	2,415,610	24,703	22,728	1,542	433	19,192	2,371,715	
10.13.(월) 0시 기준	2,428,771	24,805	22,863	1,508	434	20,124	2,383,842	
변동	+13,161	+102	+135	-34	+1	+932	+12,127	

- * 10월 12일 0시부터 10월 1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 검사 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일일 누<mark>적 격리중·격리 해제자 현황</mark>











② **지역별 확진자 현황** (10.13. 0시 기준, 24,805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TICH	금일	신규	치기기느게	(0/)	인구10만명당
지역	국내발생	해외유입	확진자누계	(%)	발생률 [*]
서울	18	2	5,584	(22.51)	57.37
부산	1	0	489	(1.97)	14.33
대구	0	1	7,141	(28.79)	293.09
인천	0	0	968	(3.90)	32.75
광주	1	1	499	(2.01)	34.26
대전	9	1	408	(1.64)	27.68
울산	0	0	155	(0.62)	13.51
세종	0	0	78	(0.31)	22.79
경기	32	6	4,713	(19.00)	35.57
강원	4	0	231	(0.93)	14.99
충북	1	0	179	(0.72)	11.19
충남	2	0	499	(2.01)	23.51
전북	1	0	152	(0.61)	8.36
전남	0	0	176	(0.71)	9.44
경북	0	1	1,570	(6.33)	58.97
경남	0	0	297	(1.20)	8.84
제주	0	0	59	(0.24)	8.80
검역	0	21	1,607	(6.48)	-
총합계	69	33	24,805	(100)	47.84

-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분	합계	서 울	부 산	댗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북	충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검 역
격리 중	1,508	554	79	12	73	3	51	9	4	382	9	22	38	33	8	33	11	0	187
격리해제	22,863	4,965	406	6,933	887	493	352	144	74	4,248	219	156	455	119	166	1,481	286	59	1,420
사망	434	65	4	196	8	3	5	2	0	83	3	1	6	0	2	56	0	0	0
합계	24,805	5,584	489	7,141	968	499	408	155	78	4,713	231	179	499	152	176	1,570	297	59	1,607

^{* 10}월 12일 0시부터 10월 1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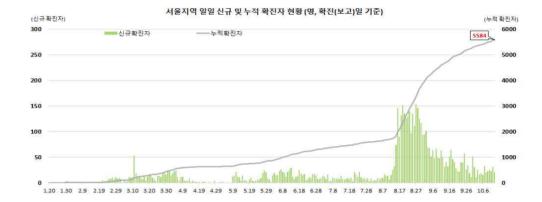


<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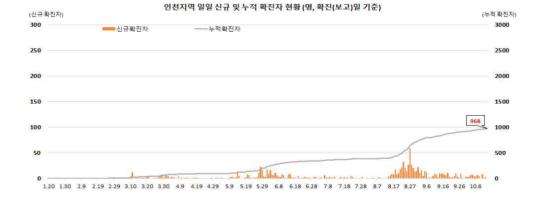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신규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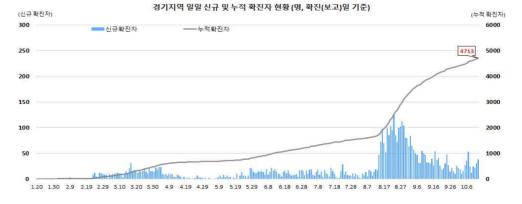
서울지역 확진자 현황



인천지역 확진자 현황



경기지역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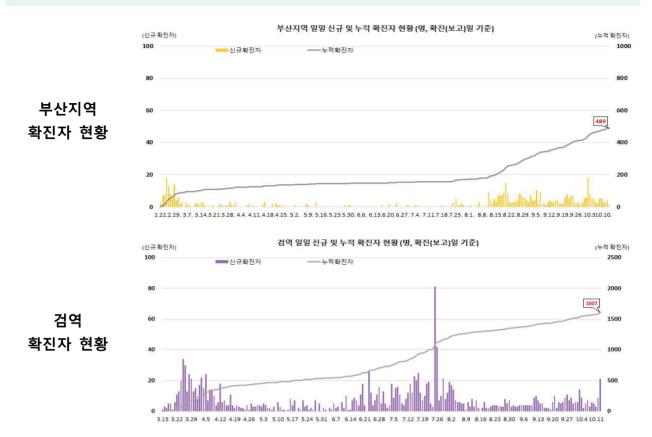








<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③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10.13. 0시 기준, 24,805명)

< 확진자 성별·연령별 발생현황 >

7	·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102	(100)	24,805	(100)	47.84
성별	남성	64	(62.75)	11,543	(46.53)	44.63
~ ~ ~ ~ ~ ~ ~ ~ ~ ~ ~ ~ ~ ~ ~ ~ ~ ~ ~	여성	38	(37.25)	13,262	(53.47)	51.04
	80세 이상	1	(0.98)	1,014	(4.09)	53.39
	70-79	7	(6.86)	2,006	(8.09)	55.61
	60-69	12	(11.76)	3,962	(15.97)	62.45
	50-59	13	(12.75)	4,574	(18.44)	52.78
연령	40-49	20	(19.61)	3,307	(13.33)	39.42
	30-39	16	(15.69)	3,049	(12.29)	43.28
	20-29	21	(20.59)	4,912	(19.80)	72.17
	10-19	7	(6.86)	1,362	(5.49)	27.57
	0-9	5	(4.90)	619	(2.50)	14.92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④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10.13.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7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1	(100)	434	(100)	1.75
 성별	남성	1	(100)	232	(53.46)	2.01
O Z	여성	0	(0.00)	202	(46.54)	1.52
	80세 이상	0	(0.00)	218	(50.23)	21.50
	70-79	0	(0.00)	142	(32.72)	7.08
	60-69	0	(0.00)	47	(10.83)	1.19
	50-59	1	(100)	21	(4.84)	0.46
연령	40-49	0	(0.00)	4	(0.92)	0.12
	30-39	0	(0.00)	2	(0.46)	0.07
	20-29	0	(0.00)	0	(0.00)	0.00
	10-19	0	(0.00)	0	(0.00)	0.00
	0-9	0	(0.00)	0	(0.00)	0.0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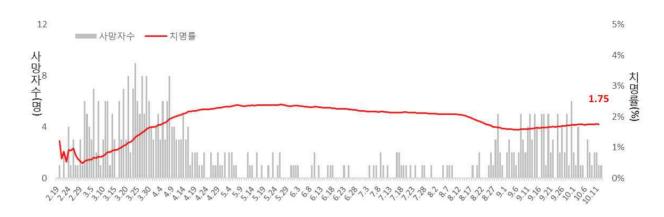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중증환자 현황 >

구분	9.3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0.10	10.11	10.12	10.13
계	109	107	107	104	105	107	105	102	97	94	89	89	87	91
중증	53	54	52	52	54	56	52	51	45	42	41	42	41	41
위중	56	53	55	52	51	51	53	51	52	52	48	47	46	50

구분	계	중증	(%)	위중	(%)
계	91	41	(100.0)	50	(100.0)
80세 이상	18	11	(26.8)	7	(14.0)
70-79세	35	11	(26.8)	24	(48.0)
60-69세	31	16	(39.0)	15	(30.0)
50-59세	3	0	(0.0)	3	(6.0)
40-49세	4	3	(7.3)	1	(2.0)
30-39세	0	0	(0.0)	0	(0.0)
20-29세	0	0	(0.0)	0	(0.0)
10-19세	0	0	(0.0)	0	(0.0)
0-9세	0	0	(0.0)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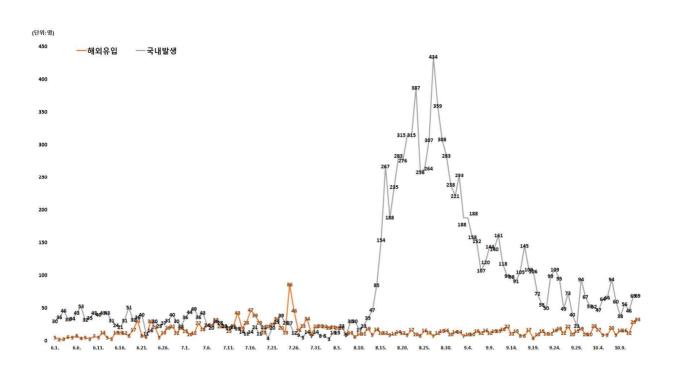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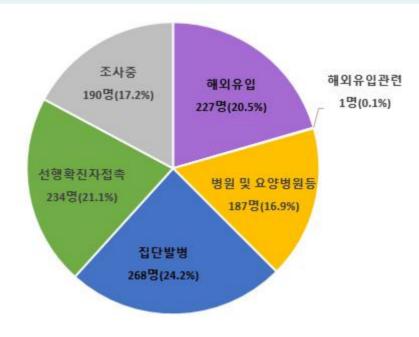


⑤ 감염경로

<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9.30일 0시~10.13일 0시까지 신고 된 1,107명) 감염경로 구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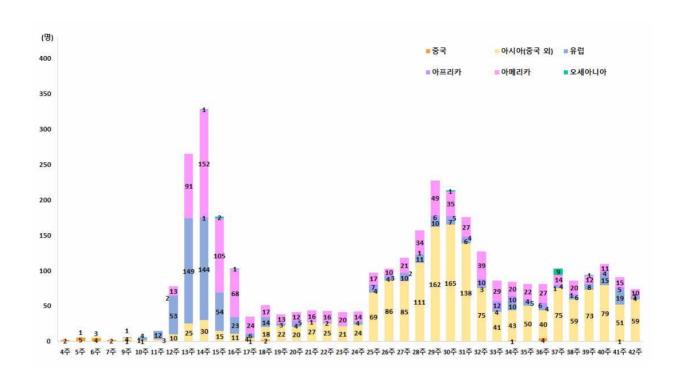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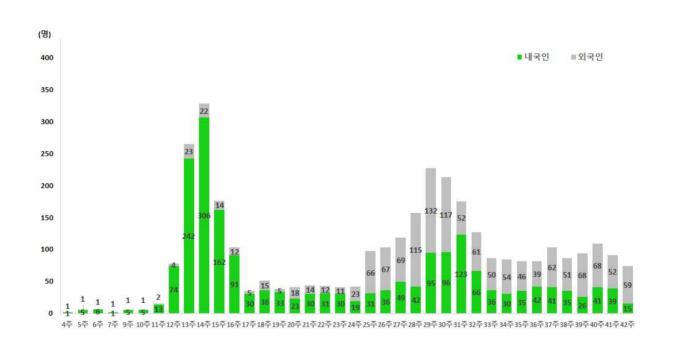






<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 , ,	- H L'	20 1	-0 ′		
				확진환지		명, %)				
지역	누계	해외 유입	소계	집단 발 신천지 관 련	생 관련 집단 발병	해외유입 관련	기타*	쥤소	신규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서울	5,584	438	3,065	8	2,984	73	1,076	1,005	20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부산	489	52	333	12	266	55	50	54	1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충남 2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47명)
대구	7,141	88	5,369	4,512	853	4	935	749	1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인천	968	101	624	2	614	8	135	108	0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광주	499	57	377	9	362	6	35	30	2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대전	408	36	241	2	239	0	86	45	10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울산	155	38	83	16	63	4	21	13	0	• 천안 운동시설 관련(123명) * 충남 103명, 세종 8명 등
세종	78	17	47	1	45	1	10	4	0	•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경기	4,713	627	2,694	29	2,599	66	775	617	38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 관련(63명)
강원	231	26	137	17	119	1	40	28	4	* 서울 63명 • 대전 의정부시 마스터플라스병원 관련(60명)
충북	179	36	88	6	75	7	30	25	1	* 경기 57명, 서울 3명 • 대전 유성구 일가족 모임 관련(21명) * 대전 21명
충남	499	69	302	0	301	1	76	52	2	• 대전 일기족 식사 및 지인 모임 관련(18명) * 대전 15명, 총남 2명, 경기 1명
전북	152	44	67	1	66	0	25	16	1	• 부산 부산한구 자인모임/의료기관 관련(16명) ★ 부산 16명 • 경기 동두천시 친구모임 관련(15명)
전남	176	40	104	1	101	2	23	9	0	* 경기 14명, 충남 1명 • 서울 미포구 서울디자인고등학교 관련(10명)
경북	1,570	60	1,170	566	604	0	200	140	1	* 서울 10명 • 경기 양주시 군부대 관련(6명) * 경기 6명
경남	297	79	174	32	139	3	21	23	0	• 강원 강릉시 지인모임 관련(6명) * ^{강원 6명}
 제주	59	20	13	0	12	1	20	6	0	• 경기도 북부 군부대 관련(37명) * 경기 37명 • 포천시 소망공동체요양원 관련(19명)
 검역	1,607	1,607	0	0	0	0	0	0	21	* 경기 12명, 서울 4명, 인천 3명 • 부산시 금정구평강의원 관련(15명)
	24,805	3,435	14,888	5,214	9,442	232	3,558	2,924	I	* 부산 15명 • 부산시 방문주사 관련(13명) * 부산 9명, 울산 2명, 경남 1명 등
합계	(%)	(13.8)	(60.0)	(21.0)	(38.1)	(0.9)	(14.3)	(11.8)	102	• 정읍시 일가족 관련(12명) * 전북 12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 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30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확진	자	사망	자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누적	신규	누적	신규	(%)	발생자 수*
미국	7,636,803	53,055	212,804	575	2.79	2320.51
인도	7,120,538	66,732	109,150	816	1.53	520.24
브라질	5,082,637	26,749	150,198	559	2.96	2392.96
러시아	1,312,310	13,592	22,722	125	1.73	911.96
콜롬비아	902,747	8,447	27,660	165	3.06	1812.74
아르헨티나	883,882	12,414	23,581	356	2.67	1959.83
스페인**	861,112	-	32,929	-	3.82	1855.84
페루	846,088	2,733	33,223	65	3.93	2571.70
멕시코	814,328	4,577	83,642	135	10.27	615.52
프랑스	707,469	16,101	32,495	46	4.59	1080.11
남아프리카공화국	692,471	1,575	17,780	107	2.57	1191.86
영국	603,720	12,872	42,825	65	7.09	901.07
이란	500,075	3,822	28,544	251	5.71	603.96
칠레	481,371	1,776	13,318	46	2.77	2570.05
이라크	402,330	2,206	9,852	62	2.45	995.87
방글라데시	378,266	1,193	5,524	24	1.46	234.37
이탈리아	354,950	5,456	36,166	26	10.19	599.58
필리핀	339,341	2,415	6,321	83	1.86	313.91
사우디아라비아	339,267	323	5,043	25	1.49	994.92
터키	335,533	1,502	8,837	59	2.63	404.26
인도네시아	333,449	4,497	11,844	79	3.55	123.73
독일**	322,864	-	9,615	-	2.98	391.83
파키스탄	319,317	385	6,580	10	2.06	156.07
카자흐스탄**	143,632	-	2,106	-	1.47	772.22
스웨덴**	98,451	-	5,894	-	5.99	974.76
일본	89,347	435	1,629	2	1.82	70.41
중국	85,591	13	4,634	0	5.41	6.03
우즈베키스탄	61,205	311	507	4	0.83	186.60
싱가포르	57,876	10	27	0	0.05	980.95
키르기스스탄	49,528	298	1,090	5	2.20	798.84
호주	27,264	20	898	1	3.29	108.62
말레이시아	15,657	561	157	2	1.00	48.18
태국	3,641	5	59	0	1.62	5.25
베트남	1,109	2	35	0	3.16	1.14
대한민국	24,805	102	434	1	1.75	47.84

^{*} 국가별 총 인구 수: 유엔인구기금(UNFPA) '19년 기준, 대한민국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금일 발생 현황 통계 업데이트 없음









10.5일 이후 코로나19 주요 신규 집단발생 현황

(10.12. 12시 기준)

□ 주요 집단사례의 지표환자 진단 소요기간 (증상발생 이후 ~ 확진)

유 형	구 분		지표환자		
π 8	구 군	증상일	진단일	소요기간	
의료기관 (1)	경기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병원 관련	10.3	10.6	+3일	
군부대	경기 북부 군부대 관련	10.2	10.3	+1일	
(2)	경기 양주시 군부대 관련	10.8	10.10	+2일	
	부산 부산진구 노래방 관련	9.20	10.4	+14일	
다중이용시설 (3)	서울 서대문구 장례식장 관련	10.6	10.8	+2일	
	경기 수원시 스포츠아일랜드 관련	9.28	10.6	+8일	
	대전 일가족 식사 및 지인 모임 관련	10.2	10.4	+2일	
모임 (3)	경기 동두천시 동네 친구 모임 관련	10.8	10.9	+1일	
	대전 유성구 일가족 명절 모임 관련	10.1	10.10	+9일	
기타 (1)	경기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관련	10.2	10.8	+6일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강화 안내



2020.10.11.

거리 두기 전국 1단계

* 수도권은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확대 등 2단계 조치 일부 유지

(2020.10.12. 0시부터 시행)

=	P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5	₽임·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 (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허용 일부 대규모 행사 (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스포	츠 행사	관중 수 제한 (최대 30%)					
국공	립시설	운영 가능, 인원 제한 (최대 50%)				
고위	험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유흥시설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다	등이용 시설	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ī	고회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사회복지시	설 어린이집	운영 가능					
기관·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전 인원의 1/3)					
	민간	유연ㆍ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근거 조항)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부과 계도기간**) 계도기간 한달간 부여 ('20.10.13.~'20.11.12.)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

부과 장소	부과 대상
집합제한 시설 ※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조정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u> </u>	대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예외자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0 -1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예외 상황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0 6	방송 줄연 (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 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워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 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 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 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